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 안 경 위

- 발 의 자 : 김인제 의원
- 의안번호 : 제283호
- 발의일자 : 2022년 10월 14일
- 회부일자 : 2022년 10월 21일

### 2. 제 안 이 유

- 현재 반려동물은 ‘재산’이 아닌 ‘가족’의 개념에 가까움. 그러나 재난으로 인한 피난시설 마련 시 시설 내부로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왔음.
- 포항 지진, 최근 호우 등으로 인한 피난처도 반려동물 동반을 할 수 없어 재난지역에 반려동물이 방치되어 들개, 길고양이 등 양산했다단 비난이 일었음.
- 해외 주요국의 경우 재난시 구조부터 피난처 동반까지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음. 이에 재난 피난처에 반려동물도 동반할 수 있도록 하여 생명존중의 의미를 제고하는 한편 재난지역에 방치된 반려동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3. 주 요 내 용

- 가. 재난 발생 시 동물과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한 시설 및 대책 마련(안 제3조)
- 나. 재난 발생 시 소유자가 동물과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한 필요한 시설과 대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다. 재난 발생 시 대피 방법에 관한 교육(안 제23조)

### 4.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 5. 검토 의견 (수석전문위원 피 재 황)

###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소유자가 반려동물과 함께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이나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유기·유실되는 동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최근 반려동물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대되면서 반려동물 복지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음. 한편, 반려동물의 증가로 인해 전국적으로 유기 동물의 수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유기동물의 양산을 막고, 반려동물을 보호하도록 하는 동 조례의 취지는 설득력이 있다 판단됨<sup>1)</sup>.
- 2022년 4월 26일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sup>2)</sup>에서는 재난 시 대피와 관련하여 제9조제4항에 명시하였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가 아닌 동물을 사육·관리하는 소유자등<sup>3)</sup>의 의무로 규정하였음.

제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제1절 동물의 보호 등

제9조(적정한 사육·관리)

④ 소유자등은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3. 4. 27.] [법률 제18853호, 2022. 4. 26., 전부개정]

1)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에 재난 발생 시 동물과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한 시설 및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제23조(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재난 발생 시 대피 방법에 관한 교육 제공  
2) 「동물보호법」 2023.4.27.시행, 2022.4.26.전부개정  
3)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제3호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 따라서 재난 발생 시 소유자등이 동물과 함께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방법 등 동물관리에 관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며, 동물보호의 관점에서 서울시의 현황에 맞는 지원 방법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한편, 「동물보호법」에서 동물 소유자와 관련하여, ‘소유자등’으로 정의하면서 소유자뿐만 아니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바, 동 조례에서도 이를 준용하여 소유자를 폭넓게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